

「평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」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. 01. 30 (수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8. 02. 20(수)
- 다. 상정일자 : 2008. 02. 20(수) 제14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민원봉사과장 신영선)

가.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하던 기존의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8027호, 2006.10.4 공포) 및 시행령(대통령령 제19999호, 2007. 4. 5 시행) 과 시행규칙(행정자치부령 제381호, 2007. 4.11 시행)이 제정·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우리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도로명 변경절차 및 고지·고시(안 제3조~안 제5조)
 - 도로명주소 고지·고시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함
- 자체 제작·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(안 제6조~안 제8조)
 -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·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
-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(안 제9조)
-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안 제14조)

-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~안 제18조)
 -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결과 훼손·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·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등에게 안내함
 -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, 절차, 지도 감독 규정
-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(안 제19조~안 제21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상진)

가. 본 조례안은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이 도로명 및 건축번호를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,

나.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도로명시설 설치후 3년이 경과한 후 해당 소유자·점유자로부터 변경요구가 있거나, 군수가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, 변경 신청시 평창군새주소위원회 심의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, 변경결정시 해당 주소사용자의 2분의 1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도록 하고,
-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·설치하거나,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일정한 규격을 갖추어 설치 가능하도록 하며,
- 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도로명시설을 점검하고 훼손되거나 망실시 재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,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금 유지관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,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고

자 할 경우 사업자의 광고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평창군새주소위원회에서 배점부여기준을 근거로 심의후 선정된 광고업자와 사업계약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또한 위와같은 제반 기능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평창군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.

다. 본 조례안은

- ‘06.10.04 일부개정된 지적법 및 같은 날자로 제정된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개정안을 기준으로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